

예 산 총 칙

2017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63,950,000	19,918,500
일반회계		581,000,000	17,430,000
특별회계		82,950,000	2,488,500
공기업특별회계 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치수사업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55,400,000	1,662,000
	수도사업특별회계	31,600,000	948,00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3,800,000	714,000
	기타특별회계	27,550,000	826,500
	수질개선특별회계	4,357,000	130,71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250,000	67,500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	1,134,000	34,02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600,000	78,0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307,000	9,21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700,000	51,000
	치수사업특별회계	8,627,000	258,810
	기반시설특별회계	775,000	23,250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1,800,000	54,000
	주차장특별회계	4,000,000	120,00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854,317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0,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